

광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862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수경, 김재인, 전병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 13. 체결된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8,285,7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 1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9,714,2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19,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광주지방법원은 2017차전661 양수금 사건에서 2017. 1. 12. "C은 원고에게 10,012,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3. 2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24. 확정되었다.
- 2)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2020. 5. 20.을 기준으로 합계 19,291,211원이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C의 재산상태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는 2020. 1.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 C이다.
- 2) 피고와 E, C은 2020. 1. 13.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20. 3.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F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2020. 9. 25.경 하위 평균 매매가는 6,400만 원, 일반 평균 매매가는 6,900만 원, 상위 평균 매매가는 7,15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취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등 참조), 피고와 C 사이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2/7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자신의 둘째 아들 G의 형사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C의 상속 지분 이상의 금액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갔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C의 상속 지분을 피고가 양도받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C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준 행위는 역시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가단512820 판결 참조).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중 C의 상속분 상당액과 원고의 피보전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2020. 9. 25.경 아파트 단지의 하위 평균 매매가인 64,000,000원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원고는 일반 평균 매매가인 69,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 상당액은 18,285,714원(= 64,000,000원 × 2/7)인 반면에, 피보전 채권액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7 상속분의 시가 상당액을 상회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분의 시가 상당액인 18,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면 적 : 제15층 호 44.9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75532.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75532.10분의 30.49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관할, 소유)

